##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1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박용갑・주철현・복기왕

박정현 • 박해철 • 황정아

강준현 • 박범계 • 이재관

이광희 · 양부남 · 김태년

오세희 • 박지원 • 민형배

염태영 · 장종태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
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우단</u>	<u>이 경우</u>
<u>신설&gt;</u>	재정자립도 등 각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부
	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여
	<u>야 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